의 안 번 호	제479호
의결 연월일	2022. 04. 05.

-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-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대상

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3. 28. 예산군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03. 28. 예산결산특별위원회

다. 상 정 일 자 : 제279회 예산군의회(임시회)

❍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(2022. 04. 05.)

- 상정, 검토보고, 예비심사결과보고, 계수조정, 의결

3. 기금조성규모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2020년도말 조성액(A)	2022년도 기금운용계획		2022년도말 조 성 액 (D=A+B-C)	증△감	비고
		수 입(B)	지 출(C)			
합 계(7개)	43,624,789	12,928,224	3,160,352	53,392,661	9,767,872	
포 괄 기 금	20,191,213	615,664	1,250,000	19,556,877	△634,336	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12,676,724	1,631,617	0	14,308,341	1,631,617	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정안정화계정)	8,694,549	9,787,168	0	18,481,717	9,787,168	
식 품 진 흥 기 금	230,027	11,000	60,000	181,027	△49,000	
주 민 지 원 기 금	422,510	63,500	126,100	359,910	△62,600	
옥외광고발전기금	117,577	150,365	190,465	77,477	△40,100	
재 난 관 리 기 금	1,292,189	668,910	1,533,787	427,312	△864,877	

4. 기금운용계획

❍ 수입계획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계	전 입 금	보 조 금	융자금회수	예치금회수	이자 및 기타수입
합 계	41,034,934	12,102,420	24,000	548,000	28,106,710	253,804
포 괄 기 금	5,288,798	39,000	0	548,000	4,673,134	28,664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 합 계 정)	14,308,341	1,562,145	0	0	12,676,724	69,472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 정 안 정 화)	18,481,717	9,656,000	0	0	8,694,549	131,168
식 품 진 흥 기 금	241,027	0	0	0	230,027	11,000
주 민 지 원 기 금	486,010	60,000	0	0	422,510	3,500
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	267,942	126,365	24,000	0	117,577	0
재 난 관 리 기 금	1,961,099	658,910	0	0	1,292,189	10,000

❍ 지출계획

(단위: 천원)

기 금 명	계	비융자성 사업비	융자성 사업비	인력운영비	예탁금 및 예치금	기본경비 및 기타지출
합 계	41,034,934	1,948,788	1,000,000	48,398	37,874,582	163,166
포 괄 기 금	5,288,798	250,000	1,000,000	0	4,038,798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(통 합 계 정)	14,308,341	0	0	0	14,308,341	0
통합재정안정화기금(재 정 안 정 화)	18,481,717	0	0	0	18,481,717	0
식 품 진 흥 기 금	241,027	60,000	0	0	181,027	0
주 민 지 원 기 금	486,010	126,100	0	0	359,910	0
옥 외 광 고 발 전 기 금	267,942	141,145	0	48,398	77,477	922
재 난 관 리 기 금	1,961,099	1,371,543	0	0	427,312	162,244

5. 검토보고요지(전문위원 : 박철희)

❍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
지방재정법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
특정사업을 위해 보유·운용하는 특정자금인 만큼
기금 조성 및 운용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하겠으며,
기타 <u>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</u>

6. 질의·답변요지

❍ 없　　음

7. 토 론 요 지

❍ 없　　음

8. 심 사 결 과

❍ 「원안가결」

9. 소수의견 요지

❍ 없　　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

❍ 없　　음